

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

보 은 군 의 회

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

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,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,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 : 1998. 12. 11(금) ~ 1998. 12. 16(수) (6일간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 :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

기획감사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재무과, 사회경제과, 환경보호과, 농정과, 문화관광산림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보건소, 환경사업소, 읍면

4. 감사반편성(감사특별위원회)

- 감사위원장 : 송 인 옥
- 간 사 : 오 규 택
- 감사위원 :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(10명)
- 사무보조자 : 전문위원 이종호
 의사담당 최재열
 직 원 2명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시	감사대상기관	감 사 장 소	비 고
'98.12.11(금) 10 : 00	군수, 부군수 및 일반행정분야	특별위원회회의실	위원장진행
12.12(토)	(일반행정분야) 기획감사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재무과	"	
12.14(월)	(사회복지분야) 사회경제과, 환경보호과, 보건소, 환경사업소	"	
12.15(화)	(산업행정분야) 농정과, 문화관광산림과 농업기술센터	"	
12.16(수)	(개발행정분야) 건설과	"	

6. 감사방법 및 요령

1) 사무범위

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
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범위내(고유
사무, 단체위임사무)

2) 질문 및 답변청취

- 회의식으로 진행
- 질문, 답변을 통한 추궁 확답
- 정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진행
-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, 대안 개발제시

3) 현지확인 및 증언, 의견진술청취

-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
-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청취

4) 행정사무감사의 한계

- 기관위임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감사 불가
- 개인의 사생활 침해불가
-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불가
-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 불가

행정사항

1. 질문요지 작성제출

감사특위 위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 '98년 12월9일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2.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- 감사특위 위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, 시정조치 요구사항, 건의사항, 기타의견을 작성 감사종료 3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- 감사특위 위원장은 감사경위와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, 건의사항, 기타 감사에 따른 의견이나 특기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, 12월29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의장(본회의)에게 보고한다.